



1. 선박제원		(기재번호 : 1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선박명	오션플라워 OCEAN FLOWER	
선박번호	PHR-016520	
총톤수	445 톤	
진수일자	2001. 07. 10	
선적항	포항	
선질	알루미늄 합금	
선박용도	고속여객선	
등록치수 (길이×너비×깊이)	45.67 × 11.80 × 4.20 m	
기관종류 및 출력	MTU 16V4000 M70 / 2,320 kw × 4	
최대승선인원	총 452 명 (여객 : 443명, 선원 : 9명, 임시승선자 : 0명)	
선박소유자	(주)대아고속해운 (국적 : 대한민국 )	
운항사업자	(주)대아고속해운 (국적 : 대한민국 )	
선박국적	대한민국	
기재일자	2017 년 04 월 01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
株式会社 大亞高速海運 사업자 代表理事 朴 成 (인)		
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2/8)

2. 선박의 도입 및 매매		(기재번호 : 1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선박의 도입		
매수일자	2001 년 09 월 03 일	
매도자	FBMA (국적 : 필리핀)	
신조선·중고선 여부	신조선	
선박 도입 당시 선령		
선박의 매매		
매도일자	년	월 일
매수자	(국적 : )	
기재일자	년	월 일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
株式会社 大亞高速海運 사업자 代表理事 朴 成 (인)		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3/8)

3.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		(기재번호 : 1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항로명	북호-울릉-속초-양화(북한) 북호-울릉 부산 - 대마도	
항해구역	연해구역(국제항해 포함)	
출발지/기항지/중착지	북호-울릉-속초-양화(북한) 북호-독도-울릉 부산/대마도(히타카츠, 이즈하라)	
운항기간	2001년 09월 05일 ~ 2006년 07월 19일 2006년 07월 20일 ~ 2012년 01월 31일 2012년 02월 01일 ~ 현재	
기재일자	2017 년 04 월 01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株式会社 大亞高速海運 사업자 代表理事 朴 成 (인) 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4/8)

4.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		(기재번호 : )
기재항목	기재사항	
건조검사 / 정기검사 / 제1종 중간검사 / 임시검사		
검사일자	2017년 03월 16일 - 2017년 03월 22일	
검사기관	한국선급 여수지부	
검사자	기관 : 한재식 검사원, 선체 : 오양국 검사원	
검사결과	특이사항 없음	
기재일자	2017 년 04 월 01 일	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株式会社 大亞高速海運 사업자 代表理事 朴 成 (인) 

여객선 이력관리 장부(5/8)



6. 선박개조 이력 ※ 「선박안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		(기재번호 : )		
기재항목		기재사항		
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일자		년	월	일
허가자				
변경내용	변경 전			
	변경 후			
기재일자		년	월	일
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		사업자 (인)		

※ 변경사항 표시 도면 및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첨부

## 기재 시 참고사항

1. 이 서식의 기재사항은 사업자 외의 자가 수정·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내용은 한글(필요시 영문 병기)로 작성하여야 한다.
2.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작성 후, 각 호의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부여하여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한다.
3.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새로운 기재번호를 부여하고, 기재일자 및 기재번호를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  
※기재번호 예시 : 1, 2, 3, ~
4. 선박명(선박번호)의 변경으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를 새로 작성할 경우 위 2내지 3의 방법을 따르되 제1쪽에 변경된 선박명(선박번호) 및 사유를 기록한다.  
※선박번호는 국적증서상의 숫자 여섯 자리만 기록한다.
5. 사업자는 선박 및 사무소에 최초 및 개정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기록·보관하여 개정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6.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